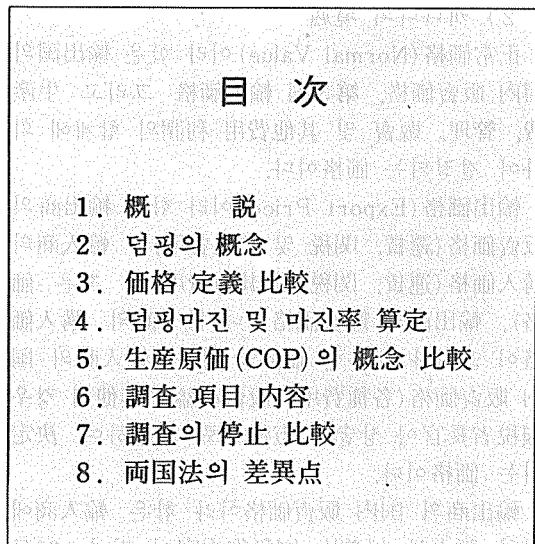


美国 反덤핑法과 캐나다 特別輸入規制措置法 比較

本会 国際部



1. 概 説

1) 美国 反덤핑法

外国의 不公正 価格競争으로부터 美国産業을 保護하는 법이 바로 反덤핑法이다.

輸入品이 美国市場에서 公正価格 이하로 販賣됨으로써 美国産業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 이른바 덤플링이 될 때에는, 反덤핑関稅를 賦課할 수 있다.

최초의立法은 1904年 캐나다의 反덤핑法이며 최초의 美国 反덤핑法은 1916年 歳入法에 포함된 価格差別 禁止法이며 1914年 크레이튼 法에 기초한 것이다.

立法 취지는 外國 輸出業者が 약탈적 価格切下에 의하여 美国産業에 피해를 주거나 그 創

立을 예방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1979年 改正 反덤핑法은 旧1921年 덤플링法을 폐기하고 1950年 関稅法의 第7章에 新 反덤핑法으로 대체하고 그 発効時期를 1980年 1月 1日로 규정했다.

新 反덤핑法은 GATT憲章의 시행에 관한 一般協定을 美国内에 시행하고 反덤핑 節次를 신속하게 하며 그 行政決定의 司法的 審查의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2) 캐나다 特別 輸入規制 措置法(SIMA)

1979年 4月 東京 라운드 多者間 貿易協商이 타결됨에 따라 각 가맹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反덤핑法 改正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80年 7月 財務省長官은 下院에 貿易政策에 관한 提議書를 제출하였다.

1982年 6月 下院 輸入政策小委員会는 同 提議書를 검토하여 報告書를 작성 제출하였다.

1983年 12月 21日 財務省長官은 각계 의견을 토대로 SIMA(Special Import Measure Act : 特別 輸入規制 措置法)案을 下院에 제출하였다.

1984年 6月 26日 同法案은 별다른 수정없이 3次에 걸친 審議를 거쳐 下院을 통과하였고 1984年 12月 3日 시행하게 되었다.

캐나다로 輸入된 모든 덤플링 및 被補助商品에 대해 商品의 讓渡 후에 審查委員会가 덤플링 또는 被補助商品이 실질적 피해의 원인이 되었거나 暫定關稅賦課 또는 約束受諾이 없었으며 실질적 피해를 유발했을 것이라는 명령 또는 判定을 한 경우 덤플링 또는 相計關稅가 부과 징수된다.

2. 덤핑의 概念

國際貿易用語에서 덤핑이라고 汚名되는 去來行為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輸出市場에서 特定商品을 그「正常価格」 또는「公正価格」이하로 판매하는 것이다. (低価가 輸出國政府의 支援行為의 결과일 수도 있다)

輸出商에 대한 政府補助의 경우에는 Bounty dumping, 運送人에 대한 補助의 경우에는 Freight dumping, 換率引上에 의한 경우에는 Exchange dumping이라고 분류된다.

캐나다의 경우 덤핑이란 正常価格이 輸出価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덤핑이라 함은 商品을 国内市販価格보다 싼 값으로 海外市場에서 판매하는 일이 있는데 国内市場에서도 특정한 市場에서 싸게 販賣하는 경우를 덤핑이라 할 때가 있다.

그 目的是 獨占利潤 확보를 위한 것이 대표적이고 獨占資本은 国内에서 獨占価格을 유지하거나 海外에서 國際競爭価格 이하로 輸出하여 販路를 열며 그로 인해 생기는 損失을 国内에서 얻는 獨占利潤 중에서 배꿀 수 있다.

또 換時勢가 떨어지는데 따른 国内価格의 引下率이 같은 정도로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国内市勢와 같은 価格으로 輸出해도 海外에서 外貨로 計算되는 価格은 떨어져 外國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덤핑으로 이를 換Dumping이라 한다.

3. 価格 定義 비교

美國反덤핑법과 캐나다 SIMA에 나오는 주요 価格定義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美国의 境遇

美国価格은 購買価格과 輸出商의 販賣価格을 포함한다.

外国市場価格(Foreign Market Value)은 輸出국 市場価格(Home Market Price), 第3國 買賣価格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한다.

輸出국 市場価格은 동일한 조건 또는 유사한

물건이 輸出국의 주요 市場에서 国内需要 목적으로 통상적 部賣量에 통상적 流通過程에서 판매되거나 買賣請約되는 価格이다.

第三國賣買価格은 調査를 위하여 선택한 標準期間 동안의 買賣가 FMV의 결정에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할 때에는 商務省은 第三國에서의 買賣 또는 推定된 価格에 의거하여 FMV를 결정할 수 있다.

公正価格은 関稅計算의 기초인 外國 市場価格을 산정한 것이다.

2) 캐나다의 境遇

正常価格(Normal Value)이라 함은 輸出국의 国内販賣価格, 第3國 輸出価格 그리고 生產費, 管理, 販賣 및 其他費用 利潤의 합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価格이다.

輸出価格(Export Price)이라 함은 輸出商의 販賣価格(運賃, 関稅 및 其他費用), 輸入商의 購入価格(運賃, 関稅 및 其他費用 중 적은 価格), 輸出商의 販賣価格이나 輸入商의 購入価格이 없거나 제휴한 価格일 경우, 輸入商의 国内販賣価格(各種費用, 販賣利益), 其他의 경우 국税省長官이 상술한 方法으로 계산하여決定되는 価格이다.

輸出商의 国内販賣価格이라 함은 輸入商에 대한 販賣日 以前中 国税省次官이 정한 60日 동안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購入者에게 같은 물량을 正常去來方法으로 판매한 価格이다.

4. 덤핑 마진 및 마진率 算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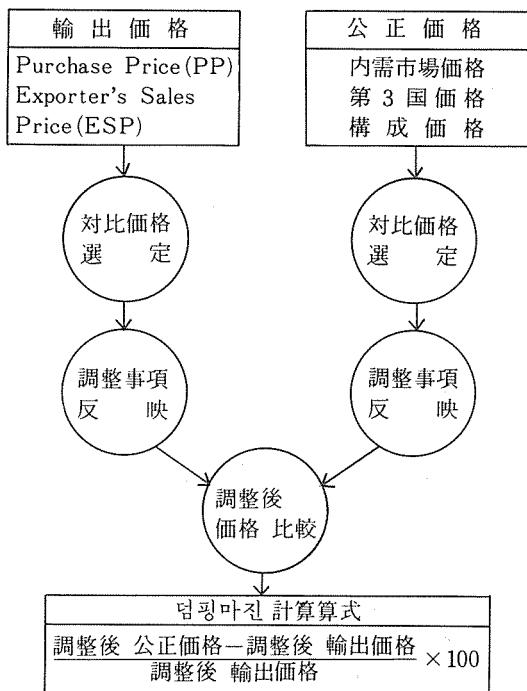
1) 덤핑 마진

美國의 경우에 덤핑 마진이라 함은 調整後公正価格이 調整後 輸出価格을 초과하는 額數를 의미하며 負의 덤핑 마진(Negative Margin)은 고려하지 않는다.

캐나다의 경우에 덤핑 마진이라 함은 正常価格이 輸出価格을 초과하는 額數를 의미한다. 실질적 피해라는 것은 캐나다内 同種商品의 生産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의미한다.

2) 덤핑 마진率 算定

〈美國의 경우〉



〈캐나다의 境遇〉

$$\frac{\text{調整後公正価格} - \text{調整後輸出価格}}{\text{調整後輸出価格}} \times 100$$

단, 約束(Undertakings)이란 用語가 있는데, 덤핑 또는 補助金 調査商品과 관련하여 国税省 次官에게 書面으로 덤핑의 경우 모든 덤핑商品 또는 실질적으로 모든 덤핑商品에 책임을 지닌 輸出商 또는 輸出商들이 價格 수정을 약속하거나 덤핑中止를 약속하는 절차를 国税省 덤핑調査開始前에 取하면 次官은 約束의 受諾을 할 수 있다.

5. 生産原価(COP:Cost Of Production)의 概念比較

1) 美国의 境遇

反덤핑에서 사용되는 生産原価의 定義를 보면 當該商品의 製造 및 販賣에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變動費와 固定費 配賦額을 포함한 總原価(Fully Loaded Cost)의 概念이다.

- 生産原価(COP)=製造原価+販賣費+一般管理費

• 製造原価=直接材料費+加工費+製造間接費
一般管理費에는 利子費用 등의 營業外費用도 포함된다.

2) 캐나다의 境遇

生産原価(COP)는 調査期間중 内需市場에서 판매된 製品의 각 모델, 製品別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등급, SIZE別로 실제 生産原価를 製品當 가격으로 표시한다.

- 生産原価(COP)=資材費+勞賃費+工場間接費+管理, 販賣 및 一般經費

資材費는 生产 단위당 原資材의 總支出 비용으로서 공장에서 지출된 엔지니어링 및 設計費用도 포함된다.

勞賃費는 生产 단위당 実勞賃, 其他 賃金, 諸惠沢 및 社交用 給與도 포함된다.

工場間接費는 당해 商品의 生产 단위당 工場間接費인데 工場用品, 光熱水道費, 監督, 營繩, 貨貸料 등을 말한다.

管理 販賣 및 一般經費는 당해 商品의 生产, 販賣에 직·간접으로 지출된 管理, 販賣 및 一般經費를 말하며 보증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費用는 별도 항목으로 포함된다.

生産原価는 국내판매, 캐나다 輸出, 第3國 輸出 등 3 항목에 대하여 산출해야 한다.

6. 調査項目 内容

1) 美国의 境遇

輸出價格, 包裝費用, 相計關稅, 諸割引(美國으로의 輸出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것), 美国内運送費用, 「판매방법 또는 特殊상황에 따른 其他費用」運送費用(국내 運送費用, 輸出促進費, 輸入關稅 등), 販賣手數料, 관련 販賣會社의 發生費用, 추가세조로 인한 增分價值, 外國市場價格, 生產原價, 工場度價格, 輸出國內 運送費用의 共濟(국내 運送費用, 保檢料, 仲介料, 기타제품 運送關聯費用), 輸出관련 包裝費用의 加算, 諸般割引(數量割引 및 其他의 割引), 物理的 形態의 차이, 流通經路의 차이(內需: 最終消費者, 美國: 都賣商), 販賣環境의 차이(金融費用, 輸入關稅, 間接稅, 廣告費, 技術用役費 등)

기타 등이다.

2) 캐나다의 경우

輸出価格, 保険料, 手数料, 倉庫料, 輸出包装費, 関税 및 税金, 其他 費用, 로얄티 및 特許料, 内需価格, 年例報告書, 總金額 및 数量, 国内販賣 atel 制度, 価格目録, 政府補助金 話文에 대한 응답은 도표로, 生産原価, 各 Model 등급별 및 Size別 總費用 總収入, 기타이다.

7. 調査의 停止 비교

1) 美国의 境遇

덤핑 調査가 개시된 경우에 輸出者側이 앞으로는 덤플링을 하지 않는다는 価格保証을 했을 때에는 덤플링 調査를 정지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輸出業者가 調査中断後 6個月 이내에 당해商品의 对美 輸出을 중지하거나, 덤플링 마진을 완전히 排除하도록 가격을 조정하여公正価格 이하로 문제를 해소시키거나, 덤플링 輸出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輸出業者와 商務省사이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商務省은 調査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은 합의를 위반하면 즉시 調査가 재개되고 동시에 清算停止가 시행된다.

合意違反이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民事上 制裁(罰金)가 가해지는데 그 最高限度는 합의를違反하여 輸入通関된 商品의 가격이 된다.

2) 캐나다의 경우

· 国税省 予備判定 전에 次官에게 外國輸出商은 캐나다에 輸入된 商品의 販賣価格을 수정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価格約束(Price undertakings)을 제출할 수 있다.

일단 약속이 次官에 의해 受諾되면 調査의 모든 절차는 중지된다.

国税省 次官이 調査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物品의 덤플링 또는 補助金에 관해

瑕疵없이 작성된 서면 提訴狀을 접수한 후 次官이 提訴狀에 상술된 物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調査를 개시하지 않기로決定했을 경우, 次官은 그 이유를 첨부하여 결정된 사실을 提訴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補助金의 경우에는輸出国政府에도 통지해야 한다.

価格約束을 違反하면 다시 予備判定으로 諸節次를 밟게 된다.

(国税省 最終判定 및 CIT 피해 判定까지)

8. 兩국法의 차이점

美国 反dumping法과 캐나다 特別 輸入規制措置法의 차이점을 주요 項目別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항 목	美	캐나다
鑑所要期間	提訴後 280~310日	提訴後 240~285日
被審判定	ITC에 의한 2回	CIT에 의한 1回
公聽會	ITC 公聽会	CIT公聽会
予備判定	商務省	国税省
最終判定	商務省	国税省
dumping調査開始	提訴日로부터 20日 이내	提訴日로부터 30日 이내
予備判定後措置	肯定判定時 官報掲載 및 清算停止, CASH 또는 BOND予置	暫定dumping開稅賦課 및 CIT에回附
dumping마진	公正価格 > 輸出価格	正常価格 > 輸出価格
dumping마진率計算	調整後 _調整後 公正価格 輸出価格 × 100 調整後輸出価格	調整後 _調整後 正常価格 輸出価格 × 100 調整後輸出価格
公正価格 및正常価格決定	• 外国市場価格 • 第3国 輸出価格 • 内需市場価格에 의하여 결정	• 国内販賣価格 • 第3国 輸出価格 • 生産費, 管理, 販賣 및 其他費用利潤의 합계에 의하여 결정
輸出価格決定	直接輸入価格 또는 間接輸出価格(国内의 販賣業者를 통하여 상품을 輸出하는 경우에는 同關聯販賣業者が 美國의 一般輸入業者에게 판매한 価格) 등	輸出商의 販賣価格(運賃, 関稅 및 其他費用) 輸入商의 購入価格(運賃, 関稅 및 其他費用 중 적은 価格) 등